

대전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1나11345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1나113452 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 6. 3 선고 2020가단1257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발

담당변호사 명을식

피고, 피항소인1. B

2. D

피고, 항소인3. E

피고, 피항소인4. F

5. 주식회사 G

피고 1, 4, 5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현

피고 1, 4, 5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재욱

변론 종결2023. 4. 20.

판결 선고2023. 6. 8.

제1심판결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 6. 3. 선고 2020가단12571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E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E은 제1심 공동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3.부터 2020. 9.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E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피고 B, D, F, 주식회사 G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 E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F과 피고 E 사이에, 논산시 H 답 315m², I 답 8m², J 답 2m², K 답 21m²에 관하여 2017. 12. 15. 체결된 매매계약, 논산시 L 답 42m²에 관하여 2018. 4.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 F은 피고 E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 12. 18. 접수 제35535호, 같은 법원 2018. 4. 12. 접수 제10883호로 각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 D, F, 주식회사 G은 피고 E, 제1심 공동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F과 피고 E 사이에, 논산시 H 답 315m², I 답 8m², J 답 2m², K 답 21m²에 관하여 2017. 12. 15. 체결된 매매계약, 논산시 L 답 42m²에 관하여 2018. 4.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 F은 피고 E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 12. 18. 접수 제35535호, 같은 법원 2018. 4. 12. 접수 제10883호로 각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E

제1심판결 중 피고 E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상가 건물 신축공사의 진행

1)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피고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은 2014. 8. 6.

주식회사 O(이하 'O'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논산시 H 답 330m²(이하에서는 토지를 지칭할 때 '논산시 V' 기재를 생략한다) 및 K 답 21m²을 매수한 후, H 토지 지상에서 지상 4층 규모의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2) 원고는 2014. 10. 3. 피고 D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M 주식회사(2019. 12. 3. 해산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이하 해산 전후를 불문하고 'M'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철근, 콘크리트 타설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90,000,000원, 공사기간을 2014. 10. 3.부터 2014. 12.까지로 각 약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3) 원고는 2014. 10. 3.부터 2014. 12. 30.까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M의 직원인 제1심 공동피고 C은 2015. 2. 14. 원고에게 90,720,000원을 2015. 4. 30.까지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중소기업은행의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부동산강제경매 신청

1) 중소기업은행은 2014. 11. 24. 피고 G을 상대로 'O이 H 답 330m², K 답 21m² 등을 피고 G에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H 토지, K 토지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카합84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2) 중소기업은행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가단79호로 피고 G을 상대로, O과 피고 G 사이에 H 토지 및 K 토지에 관하여 2014. 8. 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G이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6. 7. 21. 중소기업은행의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2016. 7. 26. 피고 G이 H 토지 및 K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말소되었다.

3) 이후 중소기업은행은 2016. 8. 30. O을 채무자 겸 소유자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P로 H 답 330m², R 답 470m², S 답 286m², W 답 394m², X 답 431m², T 답 330m², U 답 924m², K 답 21m²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피고 E이 위 각 토지를 낙찰 받았다.

4) 피고 B은 2017. 9. 20. 피고 E에게 피고 G이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하여 보유하는 유치권과 점유권에 관하여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E은 2017. 11. 9.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를 피고 G에서 피고 E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 E과 피고 F 사이 토지 매매

1) 피고 E은 2017. 12. 15. 피고 B의 사위인 피고 F과 사이에 H 답 330m², K 답 21m²를 매매대금 26,000,000원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제1매매'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7. 12. 18. 피고 F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제1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H 답

330m²에서 2018. 3. 21. Y 답 5m², I 답 8m²가 각 분할되었고, 2018. 6. 29. J 답 2m²가 분할되어 H 답 토지에는 315m²가 남게 되었다.

2) 한편, 피고 E이 2017. 6. 20.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한 토지 중 R 답 470m²에서 2018. 3. 21. L 답 42m²가 분할되었는데, 피고 E은 2018. 4. 11. 피고 F과 사이에 L 토지를 3,2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제2매매'라 하고, 제1매매와 함께 '이 사건 각 매매'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8. 4. 12. 피고 F에게 L 토지에 관하여 제2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 F은 2018. 7.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의 피고 B 등에 대한 형사 고소 및 불기소처분, 무죄 판결 경위

1) 원고는 2020. 5. 19. 피고 B, F, D, 제1심 공동피고 C이 통정, 통모하여 원고의 정당한 채권집행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들을 사기, 건설사업기본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충남논산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송치 받은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은 피고 E이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토지를 낙찰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강제집행면탈의 의사로 피고 E로 하여금 토지를 낙찰 받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2021. 4. 13. 위 피고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대전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고, 대전고등검찰청이 원고의 항고를 일부 받아들임으로써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이 보완수사를 거쳐서 2021. 10. 8. 피고 F 앞으로 2017. 12. 18. H 토지, K 토지, 2018. 4. 12. L 토지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피고 B이 피고 F에게 토지명의를 신탁함으로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변경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피고 B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 피고 F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2021. 10. 22. 2021고약707호로 위와 같은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는데, 피고 B, F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고정84호로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 F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 B이 피고 F에게 토지 및 건물 명의를 신탁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고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4) 이에 대하여 검사가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 2022노1572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명의신탁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6, 7, 10, 13, 19호증, 을가 제1, 2, 4 내지 7호증, 을다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들에 대한 금전지급청구

1)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인 C과 통정, 통모하여 마치 M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사이고, 피고 G이 시행사인 것처럼 위장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C과 연대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E은 2018. 2. 16. 피고 B, O의 대표이사 Q과 함께 원고를 만난 자리에서 원고에게 피고 B이 지급해야 할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공사대금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또한 피고 D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당사자인 M의 대표이사로서 공사대금의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2019. 12. 3. M을 해산하였으므로, 피고 B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이 있다면 이에 대한 적법한 청산절차를 거쳐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F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이 사건 각 매매는 피고들이 통정, 통모하여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통정허위표시이자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F은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2017. 12. 18. H 답 315㎡, I 답 8㎡, J 답 2㎡, K 답 21㎡에 관하여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2018. 4. 12. L 답 42㎡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말소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들에 대한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통정, 통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들이 통정, 통모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하도록 하였으므로 연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원고와 M 사이에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사자가 아닌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법리적 근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로 선행하여 보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점을 통정, 통모하였다는 것인지 명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과정이나 이행과정에서 어떠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인지에 대한 원고의 주장,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오히려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 F, D, 제1심 공동피고 C이 통정, 통모하여 원고의 정당한 채권집행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들을 사기, 건설사업기본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고, 이에 원고가 항고하여 피고 B, F에 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을 이유로 한 약식명령이 있었으나 위 피고들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E에 대한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Q의 제1심 및 이 법원에서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E은 2018. 2. 16.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 E이 공사가 중단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한 다음 잔여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원고가 찾아와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면서 공사가 다시 중단될 위기에 처하였고, 피고 E은 피고 B의 중재 부탁으로 2018. 2. 16. 대전 Z 소재 AA체육관에서 피고 B, Q, 원고 등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였다[피고 E은 이 법원 제4회 변론기일에서 갑 제8호증(사실확인서)은 피고 E이 아니라 Q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사실확인서에 날인된 인감이 피고 E의 것이고 (피고 E 역시 이를 자인하고 있다), Q이 이를 대신 날인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2) 피고 E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토지를 낙찰 받으면 피고 B도 참여한 가운데 이미 건축 허가가 나와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사업을 진행하려고 의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피고 E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H 토지 등을 낙찰 받자 피고 B은 피고 E에게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도 피고 G에서 피고 E로 변경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E로서도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을 원활하게 진행하여야 할 이해관계가 있었으므로 피고 E이 그와 같은 목적에서 원고의 공사대금을 책임지겠다고 약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2018. 2. 16. 대전 Z에 있는 AA체육관에서 피고 B, E, Q, 원고가 만난 자리에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준공 후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을 교부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E은 원고에게 자신이 공사대금을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여 원고가 이를 수긍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가 재개되어 준공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피고 E은 제1심 공동피고 C과 공동하여1)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E에게 이 사건 소장부분이 송달된 다음날2) 인 2020. 9. 3.부터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의 최종 송달일인 2020. 9.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 관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D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당사자인 M의 대표이사로서 M을 해산한 이상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D 개인에게 법인인 M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직접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나)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F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70 판결 등 참조).

나)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먼저 피고 E과 피고 F과 사이에 2017. 12. 15. 이루어진 제1매매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피고 E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2018. 2. 16. 비로소 발생하였고, 제1매매 당시인 2017. 12. 15. 위와 같은 약정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없으므로, 제1매매 후에 발생한 위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제1매매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 E과 피고 F 사이에 2018. 4. 11. 이루어진 제2매매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제2매매 당시 피고 E은 제2매매의 대상이 된 L 토지 외에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낙찰 받은 R 토지, S 토지, AB 토지, W 토지, X 토지, T 토지, U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 E은 이 사건 건물의 진입로 도로의 폭이 4m여야 준공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준공을 위하여 제2매매를 통해 L 토지를 피고 F에게 이전하여 주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2매매 당시 피고 E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 E에게 원고를 해하려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매매가 사실상 피고 B이 피고 F의 명의로 체결한 것으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같이 피고 B, F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위 형사 사건에서 피고 E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 B이 피고 F을 대리하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토지 매수 대금도 모두 피고 F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매매가 통정허위표시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국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D, F, G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고,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제1심판결 중 피고 E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E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E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E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피고 B, D, F, G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최병준

판사이소민

판사이호영

- 1) 원고는 피고 E의 채무가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제1심 공동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채무와 연대관계에 있다는 전제로 피고 E에게 제1심 공동피고 C과 연대하여 위 금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와 피고 E, 제1심 공동피고 C 사이에 연대의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다만 피고 E의 채무와 제1심 공동피고 C의 채무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등 참조).
- 2)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완료된 2014. 12.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 E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는 피고 E이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2018.

2. 16. 비로소 발생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장부분의 송달로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할 것이다.